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21호
- 나. 제 출 자 : 윤영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4. 15.
- 라. 회부일자 : 2024. 4. 15.

2.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담당하는 해당 단체에 위기 대응과 지원 의무를 더욱 구체화하였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소중한 생명 보호와 건강한 삶을 북돋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본이념 수정 및 정의 신설(안 제2조 ~ 안 제2조의2)
- 나. 자살예방 관련 단체장 등의 의무 강화(안 제4조제3항)
- 다.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등 신설
(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 성별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

마. 자살예방의 날 관련 조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4.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자살 위기 현장 출동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등과 자살예방의 날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건강한 삶을 복돋구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의2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수행업무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활동,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치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로 규정함.
 -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안 제15조에서는 자살예방의 날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0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 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 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 나.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 1. 15.]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1. 15.>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2. 3., 2022. 6. 10.>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2. 6. 10.>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2. 6. 10.>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